

## 15. 판결에 의한 취득시

1. 취득세신고서
2. 판결문 (검인) 및 증빙자료 (공시송달시 송달증명원, 확정증명원)  
취득원인 - 시효취득/ 사유코드 -27.판결 / 신고가액없음 과표로 산출 / 세율 3.5%  
판결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(시행령20조2항1호),  
판결문에 취득의 시기 없는 이행판결은 취득일자를 신고일자로 한다.
  - 증여 원인 - 취득일 : 증여일 / 상속 원인 - 취득일 : 상속개시일(사망일) / 매매 원인 - 취득일 :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 판결문에 취득일 확인이 되면, 해당 날짜가 취득일이며, 부과제척기간 지나면 취득세 부과 못 함 but, 취득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판결문은 (예: ~까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행하라 )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.